인사규정 개정 요지

1. 개정이유

○ 서울시 감사점검결과 처분 사항에서 지적된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는 징계 등 관련 규정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비위면직 처리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공사로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3조 제6호의2 신설)

○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등 및 정직 징계처분자에 대한 보수 삭감 비율을 강화하기로 노사합의 하였기에 관련 조항 개정하고자 함(안 제45조 제2항 제3호, 제4호 개정)

○ 징계시효가 짧아 비위를 적발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비위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2 제1항에 준하여 징계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도록 노사합의 하였으며, 이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8조 제1항 개정)

3. 참고사항

○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합　　의 : 해당없음

○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 13 조 (결격사유) (생략) 1. ~ 6. (생략) <신　설> 7. ~ 10. (생략)	제 13 조 (결격사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 10. (현행과 같음)
제 45 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생략) ② (생략) 1. ~ 2. (생략) 3.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 기본급의 10분의1을 감급한다. 4. 강등은 1직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중 기본급의 10분의 1을 감급한다.	제 45 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기본급의 5분의1 ------. 4.----------기본급의 5분의 1----------.
제 48 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 48 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3년----------.
	부　　칙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격사유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징계의 효력에 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